

제1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 8.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작성자	마곡사업담당관	담당: 조병훈 (☎2133-1518)	팀장: 김인숙 (☎2133-1512)	과장: 이기완 (☎2133-1510)
-----	---------	-------------------------	-------------------------	-------------------------

「제1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3. 8. 22(화) 10:30 ~ 11:30
 -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10명
 - 당연직 위원 (5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도시계획국장, 강서구 부구청장
 - 위촉 위원 (5명) : 박진형, 서정선, 전성빈, 김용직, 신창호
- ※ 마곡사업추진단장 배석

◆ 안 건(1건)

〈심의안건 1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 1) 마곡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원안대로 가결함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추가
 - 중소기업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 ② 중소기업은 연구시설 의무면적 50%→40%이상으로 완화
 - 원안대로 가결함

※ 용도별 시설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포함 명시

□ 주요내용

〈심의안건 1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 간사 : 안건보고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안건상정 사유

1) 7월25일자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함

- 총면적은 변함없고, 구역별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시설 의무면적을 완화함

안 건 심 의

○ 위원장

- 오늘 안건은 크게 보면 한 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세 건이 됨.

우선 첫번째 마곡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제시 바람.

○ 000 위원

- 특별히 의견 없음.

○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그다음 두번째 안건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시설을 일부 갖추는 내용과

세번째 안전인 연구목적 의무면적을 낮추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바람.

○ 000 위원

- 첫째 왜 이게 20%인지, 둘째 20%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제재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람.

○ 간사

- 연구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20%로 한정된 것임.
- 용도변경하거나 확대할 경우 단계별로 여러가지 제재 방안이 있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입주계약, 건축자문,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 각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함.
사업개시 후에는 불법용도변경시 건축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입주계약 위반시 공장설립취소 등이 가능함

○ 000 위원

- 양적 규제보다도 위험물 관리 등 질적 규제가 더 필요한 곳이 아닌지?

○ 간사

- 위험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은 못들어가게 법으로 제한되어있음

○ 000 위원

- 위험한 업종이라든지, 오염이 심한 업종은 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함.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검토해야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독립적인 R&D 위주의 연구소 시설이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중소기업은 제조공정과 R&D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여기 입주할 업체들은, 주로 보면 업종들이 도시형 업종으로서, 위험물이라든지 환경오염 등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음.
만약에 설령 그런 게 있다면, 입주선정 과정부터 규제를 하고, 또 도중에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갈 테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함.

○ 000 위원

- 안전이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지?

○ 간사

- 연구면적 완화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됨.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대기업도 해당됨.

대기업은 '일단 연구한 것을 시제품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음.

○ 마곡사업추진단장

- 연구를 하려면 시험제품 제조시설은 해야 되는데 대덕도 규정 넣어놨음.

○ 000 위원

- 제조시설은 연구단지 성격 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심사, 사후제재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단순히 명목상의 규제가 아니고, 질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됨.

법에서 허용 여부에 집착할 게 아니고,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지를 볼 필요 있음.

- 그리고 꼭 대기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마곡사업추진단장**

- 대기업들은 본격적인 제조시설은 안할 것이지만, 범규상 시제품 시설은 필요함.

○ **000 위원**

- 회계상, R&D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에는 시제품 생산이 들어가 있음. 영리추구를 하는 기업에서 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제품 생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음.

- 그리고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음. 업종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제품차원과 본격적 생산에 중간정도 마켓 테스트 차원에서, 20%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봄.

○ **000 위원**

- 개념상으로는 R&D와 관련된 시제품을 만들 때, R&D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시제품까지 만드는 것을 다 용납을 하는데, 시제품 만드는 것도 공장이므로.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지 않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음.

○ **000 위원**

-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 원칙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됨.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에 허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기업에 대한 문제는 다른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음.

○ 위원장

-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은 20%라 그래도 큰 면적을 차지 안 할 텐데, 대기업 경우에 20%면 굉장히 큰 것이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됨.
- 대기업은 별도의 다른 사례를 보고, 다른 기준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지금 연면적 20%면 상당히 많은 것임.

○ 000 위원

-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리소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했을 때,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
-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들어가야 함.

○ 위원장

-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한 대로 수정바람.
- 지금 해결하지 못한, 대기업의 시제품 문제는 다시 연구 바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결정하고 회의 종료함.

.....11시30분(2013년 제1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